

특정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3년 시설물 관리 특정감사 —

2023. 11.



#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관	건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계		3건	3	0						
1	○ ○ ○	△△인도교 개체공사 추진 부적정	1							
2	◎ ◎ ◎	걷기 좋은 @@@@ 조성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1							
3	□ □ □ □ □	&&&&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추진 및 사후관리 부적정	1							

# 2. 처분요구일람표

- 1. △△인도교 개체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 1
- 2. 걷기 좋은 @@@@ 조성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시정) ..... 4
- 3. &&&&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추진 및 사후관리 부적정 (시정) ..... 7

일련번호	1	감사자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인도교 개체공사 추진 및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  
 관 계 부 서 ○○○  
 내 용

♡♡♡ ○○○에서는 2014년 △△인도교 안전점검 D등급 판정에 따라 인도교 개체공사를 위해 2019. 12. 20. (주)※※건설과 공사계약 후 2019. 12. 23. 착공하여 2021. 12. 28. 준공하는 등 아래 [표 1]과 같이 “△△인도교 개체공사”를 추진하였고, 현재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1] 시설공사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 (백만 원)	도급자
△△인도교 개체공사	보행교 L=282m	2019. 12. 20.	2019. 12. 23.	2021. 12. 28.	3,392	(주)※※건설

### 1. 공사감독 업무 미흡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 제138조 및 제14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 단계별 시공 상태의 확인 업무를 수행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 목적물이 적정하게 시공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일 현재 현장 확인 결과 ♡♡♡ ○○○에서는 “△△인도교 개체 공사”를 추진하면서 작업 단계별 시공 상태의 확인 등의 업무추진에 있어 공사 목적물 중 일부 인 교량 연석부(B=0.2m, H=0.3m, L=282m@2) 콘크리트 양생관 리에 대한 충분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교량 연석부에 전반적인 미세균열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에서는 위 공사 추진 기간 중에 ○○○○○○○○○☆☆☆☆ ☆에서 실시한 ‘건설현장 안전점검(☆☆☆☆☆-3285, 2021. 9. 7.)’에 따라 시공 중인 교량 연석부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에 따른 지적 및 보완요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시공사의 조치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결과 확인 등의 현장 조치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사진]과 같이 미흡한 보수상태로 공사를 준공 하였다.

**[사진] 교량 연석부 미흡한 균열보수 전경사진 (생략)**

## 2. 하자검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

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부서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하자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2022. 5. 20. 초기점검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아래 [표 2]와 같이 1차 하자 보수를 시공사로 통보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연석부 균열 보수 보완내용은 하자보수 내용에 포함하지 않고 시행되어 감사일 현재까지 미흡한 균열 보수 부분에 대한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표 2] 구조물 보수 내역 (생략)

그 결과 미흡한 보수로 인한 보행인도교 연석부 콘크리트 균열의 적절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용에 따른 부재의 중성화로 인한 내구성 저하 및 보행자 불안감 조성의 우려가 있는 상태로 시설물이 공용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하자 보수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2	감사자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걷기 좋은 @@@@ 조성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  
 관 계 부 서    ○○○  
 내 용

♥♥♥ ○○○에서는 [표 1]과 같이 2021. 10. 5. ♣♣♣♣♣(주)와 계약하고 2022. 10. 23. 준공된 “걷기 좋은 @@@@ 조성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1] 시설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위 치	사업량	공사금액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액	관급액			
걷기 좋은 @@@@ 조성사업	♥♥♥ @@@@길 일원	가로환경정비 L=1.05km	615	226	389	2021. 10. 7. ~ 2022. 10. 23.	♣♣♣♣♣(주) 0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11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고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을 기록·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시설공사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된 경우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하자의 발생원인과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하자보수를 시행한 후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을 기록한 하자보수 관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런데 ♥♥♥ ○○○에서는 2022. 10. 23. 준공된 “건기 좋은 @@@@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표 2]와 같이 ◆◆◆로부터 하자검사 실시공문을 통보받고 도 2022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 [표 2] 하자검사 업무 현황 (생략)

또한 감사기간 중(2023. 10. 16.) 현장 확인 결과 경관조성을 위해 아스팔트 도로 상에 시공한 도막형 포장면(0,000㎡/000백만 원)이 [사진]과 같이 일부 균열발생이 되는 등의 하자가 발생된 상태이나, ♥♥♥ ○○○에서는 2023년 상반기 하자검사결과 ‘이상없음’으로 ◆◆◆에 통보하고 현재까지 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 [사 진] 도로 포장 현장 사진 (생략)

조치할 사항 ♥♥♥♥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하자 보수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3	감사자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추진 및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

관 계 부 서 □□□□□

내 용

### 1. 시설물 하자관리 부적정

♥♥♥ □□□□□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공영주차장 건립공사”를 (주)●●건설과 2021. 9. 27. 계약하고 2022. 12. 20. 준공하였으며, 현재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1] 시설공사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공사기간	사업비(백만 원)				도급자	비고
			계	도급액	관급액	기타		
&&&&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주차타워 5층 6단 300면 9,375.07㎡	2021. 9. 28.~ 2022. 12. 20.	11,773	7,877	2,562	1,334	(주)●● 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11절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11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고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을 기록·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시설공사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하자의 발생원인과 조치계획을 제출받고 하자보수를 시행한 후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을 기록한 하자보수 관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런데도 ♥♥♥ □□□□□에서는 2022. 12. 20. 준공된 &&&&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면서 ◆◆◆로부터 2023년도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 공문 ‘◆◆◆-11718(2023. 5. 2.)호’를 접수하여 하자검사를 위임받았음에도 하자검사조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같은 해 8. 14. 에서야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완료처리를 하지 않는 등 준공 이후 2023. 10. 19.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표 2]와 같이 하자검사를 규정에 맞게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아래 [사진]과 같이 누수, 내화피복 탈락, 조정 수목 고사, 배수로 트렌치 누락 및 철골부재 부식 등이 확인되었으나 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예산 낭비 및 화재 시 안전상 우려가 있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옥상 층 균열, 계단 녹 발생 및 내화뿔칠 탈락 등 하자가 발생되자 2023. 8. 14. 계약상대자인 (주)○○○건설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발생 원인을 제출하지 않았고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하자보수 관리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하자보수를 부적절하게 시행한 사실이 있다.

[표 2] 하자 검사 현황 (생략)

[사진 ] &&&& 공영주차장 하자 현황 (생략)

2. 건축공사 준공 후 공유재산 관리업무 부적정

「건축법」 제29조 및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할 경우 관할 허가권자와 협의 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한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용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 □□□□□에서는 “&&&& 공영주차장 건립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 건축물대장 생성을 요청하고 60일 이내에 등기·등록하거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 □□□□□에서는 2022. 12. 20. “&&&& 공영주차장 건립공사”를 준공한 후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약 8개월이 지난

2023. 8. 4. 에서야 허가권자인 ○○○에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을 요청하였고,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에 해당하는 2023. 2. 20. 까지 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2023. 10. 19. 감사일 현재까지 등기·등록하거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우수유출 저감대책 미수립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 저감시설<sup>1)</sup>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 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신축·증축·개축·이전을 포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대지 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 □□□□□에서는 “&&&&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의 설계 용역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한 9,375.07㎡로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개발 사업에 해당하는데도,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을 누락한 설계서를 아무런 시정 및 보완요구 없이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한 사실이 있다.

---

1) “우수유출 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

그 결과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관련 법령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은

- ① 앞으로 사후관리 업무 추진 시 관계 법령 규정 확인을 철저히 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함께 엄중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하자 보수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시정)